

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

-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 [별표 15]

가.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·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.

나. 인터넷, TV,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「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,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‘이력번호 표시제품임’을 표시해야 한다.

- 1) 표시 시기: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
- 2) 표시 문구(예시): 이력번호 표시제품임.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

다.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.

- 1) 설명 방법: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, 반복적(1회당 2번 이상)으로 설명
- 2) 설명 문구(예시):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,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.

※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

구분	위반행위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제34조 (과태료)	·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(법 제18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)	70	140	280	500
	·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(법 제26조)	50	100	200	400